

의안번호	2220517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6. 8. 28.
추계번호	26C40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제5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u>피해아동 가정의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을 수행함</u> ※(현행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u>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수행함</u>	의무규정
2	안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하고(제1항), 그 결과 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의무규정 (제2항·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제5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기존 성과평가와 별도로 실시하며, 해당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가 설치되거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또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예방 업무의 일환으로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등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은 523억 6,900만원이며(국고보조율 50%), 이 중 53억 1백만원이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위해 편성됨(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율 50% 적용)
-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희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실시한 성과평가¹⁾는 2025년 수행하였으며,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1억원의 재정이 소요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보건복지부의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여부,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확대될 아동보호시설의 수 및 개선 사항의 구체적 내용, 국가가 지원할 비용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47조제4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확정될 평가 방법 및 환류 체계 등이 확정되지 않음

1) 「2025년(‘22~’24실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연구」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